

국제 인권 동향

Human Rights Worldwide

1. 코로나19와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유엔인권이사회: 인권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관한 회의 개최

2020년 6월 유엔인권이사회는 인권의 보호 및 증진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이행에 관한 결의안 43/19호를 채택했다. 본 결의안은 2021년, 2022년, 2023년 각 한 차례 인권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관한 대화 및 협력을 위한 회기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21년 1월 14일 첫 번째 회의가 “더 나은 상태로의 회복: 인권을 고려한 코로나19로부터의 지속가능하고도 탄력적인 회복”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목표 10번(모든 종류의 불평등 해소)과 16번(인권, 정의 및 제도 구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일제 브랜즈-케흐리스 인권사무차장보는 구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미치는 영향, 특히 10번과 16번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이에 발언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코로나 19 이전부터 오랫동안 ‘지속불가능한 수준의’ 불평등에 대한 경고가 있었다. 이번 감염병으로 인해 사회 분열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코로나19 대응은 우리에게 정치적 의지가 있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여러 나라에서 정부가 신속하게 행동하여 의료보호서비스를 확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건강이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는 등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더 나은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정치적 의지가 필요하다.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인권과 동등한 기회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회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지속가능발전목표 10번과 16번과 관련한 진전은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불평등의 감소와 새로운 사회계약의 체결에 관한 지속가능발전목표 10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보호 노력을 다시 한 번 새롭게 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의 보장을 위해 가능한 최대의 자원을 투자하여야 한다.”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란?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 공동의 17개 목표이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라고도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http://ncsd.go.kr/unsdgs?content=2>(지속가능발전목표 개요)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Pages/IntersessionalMeeting2030Agenda3rd.aspx>(인권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관한 대화 및 협력을 위한 회기간 회의 개요)

<https://www.ohchr.org/EN/HRBodies/HRC/Pages/NewsDetail.aspx?NewsID=26657&LangID=E>(인권사무차장보 구두발언)

2. 유엔개발계획 소식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법접근의 어려움

코로나19 감염병이 발생했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코로나19는 단순한 보건위기가 아닌, 인권 위기이자 사법제도의 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법절차의 이용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 가족분쟁, 노동분쟁 등이 증가했고, 코로나19 대응정책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같은 기본적 권리와 자유가 침해되었기 때문이다.

사법제도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법률지원의 부족으로 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의 사법접근이 제한되었으며, 소외된 취약집단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감염병 시기 격리조치로 인해 가정폭력에 노출된 이들이 증가했는데,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규명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법절차 이용요구의 급증에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염병 발생상황에서 사법접근의 보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의 이행이 장기적 회복의 핵심요소가 되어야 한다. 아킴 슈타이너(Achim Steiner) 유엔개발계획 사무총장은 "법치와 인권의 존중이 근본적 변화의 핵심이 되어야 하고, 이 때 신뢰, 책임규명, 정의의 원칙이 근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유엔개발계획의 현지 사무소는 각 국의 상황에 맞는 개입을 통해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법률지원전화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지 변호사를 통해 국경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레바논에서는 변호사협회가 젠더기반폭력의 생존자들에게 무료법률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몬테네그로는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는 촉매제가 될 수도 있다. 사법제도를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개혁할 수 있다. 가이아나에서 유엔개발계획은 기술을 이용해 전자서비스를 제공, 낙후된 지역에서도 중앙사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유엔개발계획은 어느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약속에 따라 사람중심의 접근방식으로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사법제도를 개혁하고 혁신을 통해 모두를 위한 사법정의를 실현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https://www.undp.org/content/undp/en/home/blog/2020/the-changes-and-challenges-to-justice-in-the-time-of-covid-19.html>

3. 휴먼라이츠워치 소식

휴먼라이츠워치,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표현의 자유 침해수준 조사

휴먼라이츠워치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각 국의 표현의 자유 침해수준을 조사하여 2월 초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적어도 83개국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구실로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당국은 공중보건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발언을 처벌하는 모호한 법을 제정하거나 정부대응에 비판적인 이들을 구타, 감금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파악한 정부의 권리침해는 다음과 같다.

- 적어도 18개국에서 군, 경찰이 의료보건 예산의 부족과 같은 이유로 정부대응을 비판한 언론인, 블로거, 시위 참가자들을 구타했다. 이들은 평화로운 시위 참가자들에게 실탄을 발사하거나 구금하여 구타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 적어도 10개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의 시행 등을 이유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정책에 비판하는 시위를 자의적으로 금지하거나 해산시켰다. 또한 코로나19를 구실로 감염병과 무관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시위를 금지시키기도 했다.

- 2020년 1월 이후, 적어도 24개 국가에서 코로나19나 다른 공중보건사태에 대해 당국이 판단하는 위험한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모호한 기준의 법을 제정했다. 부정확한 법을 통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이에 대해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을 시행할 때 국내법,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는 반드시 불가피하고 비례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이러한 제한적 조치를 시행할 경우 관련 조약기구에 권리보장의 예외(derogations)를 통보하여 독립적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의 인권보호에 관해서 유엔인권최고대표에게 보고서를 요청하고 책임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별 대응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유엔조약기구들과 세계보건기구도 각 국이 인권을 준수하면서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필요시 권고와 구제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https://www.hrw.org/news/2021/02/11/covid-19-triggers-wave-free-speech-abuse#:~:text=At%20least%2083%20governments%20worldwide,Human%20Rights%20Watch%20said%20today>

4. 유엔특별절차 소식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2021-2023년 업무계획 발표

성소수자들은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서도 자유와 평등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오늘날 수십 만의 성소수자들은 자신들의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해 죽음을 당하거나 구타, 고문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엔인권이사회는 2016년 결의안 32/2호를 통해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직위를 신설했다. 2019년 6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을 통과시켜 특별절차의 임기를 연장했다.

독립전문가는 2020년까지 유엔 인권이사회 상호대화, 유엔 총회의 상호대화, 그 밖의 협의 절차를 통해 다양한 정부와 비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받아 2021-2023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

독립전문가의 임무의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의식 제고, 효과적인 국가별 대응에 대한 지원이다. 첫 번째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으로 인한 폭력 및 차별이 성소수자들의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전 세계적으로 제고하고자 한다. 이는 차별과 폭력의 근본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포함한다. 이렇게 성소수자의 현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 그 자체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독립전문가는 각 국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언을 제공한다.

보고서나 성명서를 준비할 때 독립전문가는 대화와 교차성이라는 두 가지 근본원칙을 따른다. 대화를 통해 유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 직위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던 국가들의 의견을 듣고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이들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교차성 분석을 통해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뿐만 아니라 인종, 종교, 이주민 지위 등 다른 요소들로 인해 교차적 차별을 받는 이들의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다.

독립전문가는 다른 유엔특별절차들과 마찬가지로 연구, 방문, 개인통보와 같은 작업방식을 통해 활동을 수행한다. 독립전문가의 3개년 업무수행계획 전문을 번역하여 다음호에 소개할 예정이다.

https://www.ohchr.org/Documents/Issues/SexualOrientation/Report_Work_Plan_2021_2023.pdf

5. 유엔 주요회의 일정

일 시	회의명
2021/2/15-2/19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제25차 회의
2021/2/22-3/23	유엔인권이사회 제46차 회의
2021/5/3-5/14	보편적 인권정례검토 실무그룹 제38차 회의
2021/5/17-5/21	발전권 실무그룹 제21차 회의
2021/6/21-7/9	유엔인권이사회 제47차 회의
2021/9/13-10/1	유엔인권이사회 제48차 회의
2021/11/1-11/12	보편적 인권정례검토 실무그룹 제39차 회의

유엔개발계획(UNDP)이란?

유엔개발계획은 전 세계 빈곤퇴치, 불평등과 배제의 감소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170개 국가와 영토에 상설 주재소를 두고 있다. 각국이 정책개발, 리더십 역량 강화, 제도적 역량 등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2018-2021년 전략계획은 모든 형태와 모든 차원의 빈곤 퇴치, 구조적인 대변화 촉진, 위기대응능력 확보라는 세 가지의 주요 분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은 유엔시스템 전반에 걸쳐 여러 파트너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엔개발계획의 사무총장은 유엔지속가능발전그룹의 부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유엔시스템의 펀드, 프로그램, 전문가, 부서, 사무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 인권 동향

국제 인권 동향은 위원회 직원들의 국제 인권 의식 고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월 1회 발행됩니다. 각 과에서도 관련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제안 및 코멘트는 아래로 부탁드립니다.

정책교육국 국제인권과
담당자 김효정 hjkim5@nhrc.go.kr